

서울중앙지방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5가합518664 구상금 등 청구의 소

원 고 1. 신용보증기금

2.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¹⁾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

원고 2.(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의 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

피 고 1. 주식회사 C

2. D

변 론 종 결 2015. 10. 8. (피고 주식회사 C에 대하여)

2015. 10. 29. (피고 D에 대하여)

판 결 선 고 2015. 11. 19.

주 문

1. 피고 주식회사 C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88,930,221원 및 그 중 246,622,629원
에 대하여 2014. 11. 24.부터, 40,809,421원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각 2015.
8. 1.까지는 연 12%의,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의, 그 다음 날
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1) 이 사건 소송 중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을 수계하였다.

2. 가. 피고 D과 A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2014. 4. 23. 체결된 매매 계약을 부인한다.

나. 피고 D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 남대전등기소 2014. 4. 24. 접수 제24552호로 마친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하라.

3. 소송비용 중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주식회사 C 사이에 생긴 부분은 피고 주식회사 C가 부담하고,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소송수계인 파산채무자 A의 파산관재인 B와 피고 D 사이에 생긴 부분은 보조참가로 인한 비용을 포함하여 모두 피고 D이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전제사실

가. 신용보증약정

○ 피고 주식회사 C(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주식회사 우리은행, 주식회사 하나은행(이하 '주식회사'는 모두 생략한다)과 사이에 아래 표 '대출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대출약정을 체결하고 자금을 각 대출받았고, 원고 겸 원고보조참가인 신용보증기금(이하 '원고 신용보증기금'이라고만 한다)과 사이에 각 대출약정을 위하여 아

래 표 '신용보증약정'란 기재와 같은 내용의 각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이하 순번에 따라 '1차, 2차 보증약정'이라 한다).

순 번	대출약정				신용보증약정		
	일자	상대방	과목	대출액(원)	일자	보증금액(원)	보증기간
1	2012. 2. 2.	우리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	4,500만	2012. 2. 1.	4,500만	2012. 2. 1.부터 2012. 5. 31.까지
2	2013. 8. 26.	하나은행	기업운전 일반자금	2억 7,000만	2013. 8. 26.	2억 4,300만	2013. 8. 26.부터 2014. 8. 25.까지

○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시 피고 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피고 회사를 대위하여 보증채무를 이행하는 경우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위변제금 및 이에 대한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과 위약금, 권리보전비용 등을 상환하기로 하였다.

○ 그 후, 1차 보증약정의 보증기간은 2012. 4. 27. '2012. 5. 31.부터 2013. 5. 31.까지'로, 2013. 5. 23. '2013. 5. 31.부터 2014. 5. 30.까지'로, 2014. 5월경 '2014. 5. 30.부터 2015. 5. 29.까지'로 각 변경되었고, 1차 보증약정의 보증금액은 2014. 5월경 40,500,000원(대출금액의 90%)으로 변경되었다.

나. A의 연대보증

A은 위 각 보증약정 체결 당일에 피고 회사가 위 각 보증약정에 따라 원고 신용보증기금에 대하여 부담하는 구상금 채무를 각 연대보증하였다.

다. 신용보증사고의 발생과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대위변제

○ 피고 회사가 위 각 대출약정에 따른 대출원리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자, 위 각 은행은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각 보증사고의 발생을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 신용보증기금은 위 각 은행에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피고 회사의 채무를 대위변제하고, 그 후 피고 회사로부터 292,930원을 회수하였다.

순	수령자	근거	대위변제일	대위변제 금액(원)	회수	대위변제금
---	-----	----	-------	------------	----	-------

번				대출원금 (a)	이자 (b)	금액(원) (c)	잔액(원) (a + b - c)
1	우리은행	1차 보증약정	2014. 12. 15.	40,500,000	602,351	292,930	40,809,421
2	하나은행	2차 보증약정	2014. 11. 24.	243,000,000	3,622,629	0	246,622,629
합계							287,432,050

○ 또한, 각 보증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확정손해금 채권 96원, 위약금 채권 1,258,270원, 채권보전비용 등에 소요된 대지급금 채권 239,805원 합계 1,498,171원의 채권(이하 '비용등 채권'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

라. A의 부동산 처분 등

○ A은 E으로부터 2013. 6. 3. 및 2013. 7. 25. 각 1억 원 합계 2억 원을 차용하였는데,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를 위하여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 한다)에 관하여 2014. 4. 24. E의 처인 피고 D에게 2014. 4. 23.자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원인으로 하여 주문 제2항 기재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쳐주었다.

○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무렵 A의 적극재산으로는 4,300만 원 상당의 이 사건 부동산이 있었고, A의 소극재산으로는 E에 대한 위 2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비롯하여 다수의 채권자들에 대한 대출 채무, 카드대금 채무, 물품대금 채무 등이 있었다.

마. A에 대한 파산선고 및 소송수계

○ A은 2014. 12. 15.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파산선고를 신청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5. 5. 11. 위 법원 2014하단12405호로 A에 대하여 파산을 선고하고, 변호사 B를 파산관재인으로 선임하였다.

○ 파산관재인 B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이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피고 D을 상대로

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 청구' 부분의 소송을 수계하고(이하 파산관재인 B를 '원고 파산관재인'이라 한다), 이 부분을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이 정한 부인의 소로 변경하였다.

[인정 근거]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피고 회사 사이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제194조 내지 제196조(공시송달)

원고 파산관재인과 피고 D 사이 : 갑 제1 내지 15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신용보증기금의 청구

전제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원고 신용보증기금에게 288,930,221원(= 대위변제금 잔액 합계 287,432,050원 + 비용등 채권액 1,498,171원) 및 그 중 2차 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246,622,629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1. 24.부터, 1차 보증약정 관련 대위변제금 40,809,421원에 대하여 대위변제일인 2014. 12. 15.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분 송달일임이 기록상 분명한 2015. 8. 1.까지는 약정에 의한 연 12%의,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바에 따라 그 다음 날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1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원고 파산관재인의 청구

가. 이 사건 매매계약의 부인

전제사실에 의하면 A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채무초과상태에 있었고,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피고 D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

는바, 이는 A의 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가 되는 일반재산을 감소시키는 사해행위(장차 파산절차에서 채권자들이 배당받을 배당액을 감소시키는 행위)에 해당하고,²⁾ 당시 A의 재산상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A은 이로써 총채권자의 공동담보인 일반재산을 감소시킨다는 인식도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매매계약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³⁾에 의한 부인 대상이 된다.

나. 피고 D의 항변

피고 D은, 자신은 이 사건 매매계약 체결 당시 A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한 선의의 수익자이므로, 원고 파산관재인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항변한다.

살피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부인 대상 행위라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부인할 수 없으나, 그와 같은 수익자의 악의는 추정되므로, 수익자 자신이 선의에 대한 증명책임을 부담한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1다56637, 56644 판결 등 참조)고 할 것이데, 피고 D이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위 행위가 A의 채권자들을 해하게 된다는 것을 알지 못하였는지에 관하여 을다 제1 내지 6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 D의 위 항변은

2)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의 부인대상 행위는 민법상 사해행위 외에도 편파행위가 포함되므로 민법상 사해행위보다 범위가 더 넓은데, 이 사건에서 원고 파산관재인은 사해행위(총채권자를 위한 공동담보의 감소행위) 외에 편파행위도 거론하나, 사해행위의 성립을 인정하는 터이므로 굳이 편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는 살피지 아니한다.

3) 채무자회생법

제391조(부인할 수 있는 행위)

파산관재인은 파산재단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부인할 수 있다.

1. 채무자가 파산채권자를 해하는 것을 알고 한 행위. 다만, 이로 인하여 이익을 받은 자가 그 행위 당시 파산채권자를 해하게 되는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이유 없다.

다. 소결론

따라서, 원고 파산관재인인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 의한 청구에 따라 이 사건 매매계약은 부인되고, 피고 D은 위 부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 파산관재인에게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마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부인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신용보증기금과 원고 파산관재인인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파사 김현룡

 파사 장유식

 판사 황정언

목 록

(1동의 건물의 표시)

대전 중구 F, G 제비동

시멘트벽돌조 슬래브지붕 3층 연립주택

1층 357.555m²

2층 381.02m²

3층 381.02m²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지하실

94.68m²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1. 대전 중구 F 대 1,047m²

2. 대전 중구 G 대 13m²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

제2층 제206호 시멘트 벽돌조 61.83m²

(대지권의 표시)

1, 2 소유권대지권 1060분의 58.54. 끝.